

탐정관계법



목 차

chapter 01 탐정업 법제화 추진상황	5
01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무산	5
02 제21대 국회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현황	6
chapter 02 탐정활동에 필요한 일반법원칙	7
1. 일반법 구분	7
2. 헌법	7
3.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 보호권, 헌법제17조)	10
4. 사실의 확정과 법적용의 원칙, 법 해석방법 등	10
5. 범죄의 성립 3대요건	11
6.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대원칙	12
7.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2
8. 형법상 형의 종류와 경중	12
9.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	14
10. 체포의 종류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	15
11. 공소시효	18
1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유형등 비교	19
14.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20
15. 인과 행위무능력자	20
16. 민법상 친족등 의 정의와 유효한 유언	20
17. 채무자의 고의적 재산은닉에 대한 법적 대응	21
18.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22
19.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22
23. 행정사법에서 말하는 사실조사의 의미 오남용	23

목 차

24.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정의	23
25. 수사종결의 형식	24
chapter 03 탐정관련 개별법	26
01 개인정보보호법	26
0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31
03 통신비밀보호법	34
04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
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
06 변호사법	40
0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4
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5
09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7
10 경범죄 처벌법	48
11 주민등록법	55
14 행정사법 등	58
chapter 04 탐정관련 참고법조 및 이론	61
01 정보취득 관련	61
1. 정보의 특성	61
2. 첩보와 구별	61
3. 정보의 가치	61
4. 정보의 활용	62

목 차

02 증거관련	63
1. 증거의 의미	63
2. 증거의 종류	63
3. 증거능력과 증명력	63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예외 등	64
03 범죄론	65
1. 범죄란	65
2. 사이코패스	66
3. 소시오패스	67
4. 셉테드란	68

01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무산

1) 탐정업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법인 변호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이처럼 변호사법은 법률관련 거의 모든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무상 변호사가 위 각목의 모든 일을 다하지 않고 있고 할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3) 그러므로 이러한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일정 영역을 탐정활동의 한 부분으로 인정, 법제화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이러한 논의는 크게 4가지의 제도화로 압축된다.

- ① 탐정업의 관리주체(경찰청 OR 법무부인가?)
- ② 탐정업의 관리방식(공인제 OR 등록제인가?)
- ③ 탐정업의 업무성격(사실관계파악 OR 사실조사)
- ④ 탐정업 업무의 범위(열거주의 OR 개괄주의)

02 제21대 국회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현황

이명수 의원(국민의 힘)의 민간자격 탐정업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의 공인탐정업이 현재 발의 중이고 이 부분은 탐정윤리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 일반법 구분

- 법은 대개 성문법과 불문법, 공법과 사법,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탐정업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헌법

-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통치구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중 탐정업과 가장 관련이 높은 부분은 기본권이다.
- 헌법상 기본권에는
 - ① 포괄적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 ② 자유권(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이 있다)
 - ③ 사회권(생존권) /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 및 가족 모성에 관한 권리
 - ④ 청구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 ⑤ 참정권 /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 기본권의 제한 (헌법제 37조)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상 의무

① 재산권 행사 적합의무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의 의무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④ 환경보전의 의무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⑥ 국방의 의무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 보호권, 헌법제17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④ 사실의 확정과 법적용의 원칙, 법 해석방법 등

- 사실의 확정: 입증(객관적 증거에 의한 증명)과, 추정(반증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음), 간주(증명이 확실하지 않으나 반증에 의해서 바뀌지 않음)의 방법에 의한다.
- 법령해석 방법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 질의의 요지
 -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③ 영 제2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5 범죄의 성립 3대요건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위법해야 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며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기출문제

탐정이 주로 취급하는 범죄의 개념과 그 인지시기는?

- 1)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형벌법규를 떠나서 일정한 가치판단에 의할 때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제반 일탈행위로 수임단계에서도 알 수 있다.
- 2)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어떤 행위가 성문법에 규정된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책임성이 있는 행위로 수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 3) 수임 단계에서는 실질적 의미인지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 알 수 없다.
- 4) 실질적 의미인지 형식적 의미인지는 분석이나 해석단계에서 알 수 있다.

해설 ①, 탐정의 수임사건의 대상범죄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법규 규정여부를 떠나 사회상규상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일탈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6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대원칙

-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가 주요 원칙이다.

7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적용되며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8 형법상 형의 종류와 경중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44조(자격정지)

①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형의 경중)

-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9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10 체포의 종류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

[형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1 공소시효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유형등 비교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친고죄, 모욕죄 등)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반의사불벌죄, 폭행죄 등)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절도, 횡령, 배임, 사기,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15 인과 행위무능력자

–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다.

16 민법상 친족등의 정의와 유효한 유언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채무자의 고의적 재산은닉에 대한 법적 대응**[민법]****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0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이자채권은 3년, 소비물채권은 1년이 소멸시효임

23 행정사법에서 말하는 사실조사의 의미 오남용**[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2009대법원 : 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혼과 관련된 업무 중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있는 이상, 행정사 사무소의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만을 가지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4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정의

- 용의자는 수사개시전 대상자, 피의자는 기소되기전 대상자, 기소된 대상자를 말한다.

25 수사종결의 형식

- 기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죄명
 - 3. 공소사실
 - 4. 적용법조
-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 가. 기소유예
 - 나.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다. 죄가안됨
 - 라. 공소권없음
 -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이첩하는 경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출문제

탐정의 대표적 업무는?

- 1) 채권추심업
- 2) 신용조사업
- 3) 손해사정업
- 4) 정보조사업

해설 ④, 탐정의 기본적인 업무는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입니다.

01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의3.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의4.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4의5.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의6.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탐정과 관련)
6.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판례(2020년 서울지법):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甲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甲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市)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기출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용어 설명이 틀린 것은?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이 식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동, 저장,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공개, 파괴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없도록 배열하거나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해설 ④,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당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4)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④,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가 아닌 것은?

- 1) 노조, 정당의 가입·탈퇴 등에 관한 정보
- 2)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3)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해설 ④,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증 등은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사유로 옳지 않은 설명은?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
- 4)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설 ③,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도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 2) 민감정보는 건강상태, 진료기록(병력) 등을 말한다.
- 3) 금융정보는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말한다.
- 4) 민감정보 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은 완화되고 있다.

해설 ④,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민감정보 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사유로 옳지 않은 설명은?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
- 4)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설 ③,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도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2)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교통단속
-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4) 사생활이 노출되는 비공개 장소

해설 ④, 영상정보처리기는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장소에 설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탐정이 숙지해야 할 사생활보호 관련 법규가 아닌 것은?

- 1) 통신비밀보호법
- 2) 형법상 비밀침해죄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설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탐정이 숙지해야 하는 법률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0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판례(2016년 서울북부지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의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조항에서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 1의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기출문제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감시하기 위해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죄명은?

-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해설 ①, 특정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치를 추적하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0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기출문제**타인간 대화녹음 및 사진에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
- 2) 타인간 대화녹음은 형사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3) 민사법정에서는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4) 비밀리에 촬영한 사진은 초상권 침해로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④ 비밀녹음 녹취나 촬영물도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다수의 판례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 1) 공개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 간의 전화를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 2) 본인과 상대방 혹은 본인과 복수의 상대방 간의 대화나 전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 3) 3인간 대화에서 다른 2인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 4) 본인과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민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②, 제3자간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나 본인과 상대방 혹은 복수의 상대방과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비밀침해죄의 고소권자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1) 발신인
- 2) 수신인
- 3) 수신인은 발신행위 주체가 아님으로 예외적으로 고소권자가 된다.
- 4) 편지 등의 비밀은 발신인과 수신인에게 공통되는 것이므로 수신인도 언제나 고소권자가 된다.

해설 ③, 편지의 내용은 발신인·수신인에게 다 같이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침해당했을 시 당연히 양자 모두가 고소권자가 된다.

04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 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출문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문자나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3) 간통죄 폐지로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4)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불륜증거 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문자나 대화 내용을 확보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해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망이 아닌 단순히 통신기기의 비밀번호를 푸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의 타인 비방이나 악플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닌 것은?

- 1)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 2) 정보통신망촉진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
- 3) 동호회 토론방이나 주식 종목토론폰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벌될 수 없다.
- 4) 행위자가 다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비방의 내용이 서로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해설 ③, 동호회 토론방이나 주식 종목토론폰방 등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악플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5.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5의2.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 5의3.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6.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 7의2.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기출문제

신용정보법 위헌확인청구소송 결정사항이 아닌 것은?

- 1)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현행법의 위법 여부와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별개임으로 탐정제도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 2)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이에 국한하여 탐정 유사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 3)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
- 4) 외국에서 인정되는 탐정업 분양 중 일부 조사 관련 업무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별 법률을 통하여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명칭으로 도입되어 있다.

해설 ②, 헌법재판소는 도난 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업이나 개별법에 근거한 사실조사 업은 가능하나 현행 신용정보법 규정으로 인하여 탐정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위헌확인청구소송 결정사항이 아닌 것은?

- 1)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현행법의 위법 여부와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별개임으로 탐정제도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 2)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이에 국한하여 탐정 유사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 3)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
- 4) 외국에서 인정되는 탐정업 분양 중 일부 조사 관련 업무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별 법률을 통하여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명칭으로 도입되어 있다.

해설 ②, 헌법재판소는 도난 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업이나 개별법에 근거한 사실조사 업은 가능하나 현행 신용정보법 규정으로 인하여 탐정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탐정의 숙지 사항이 아닌 것은?

- 1)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 3) 민법상 최후의 보충법인 신의성실의 원칙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탐정금지조항)

해설 ④, 신용정보법상의 탐정금지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06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판례(2016년 대법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라 한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대상 채권은 대부분 채무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양수되는 부실채권으로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에게서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여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과 강제집행 등 국가권력에 기하여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처럼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는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이 허용되는데, 처벌조항이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였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대부업자에게서 대부채권을 양수한 자는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여 특별히 가벌성이 증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업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는 비록 이를 업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처벌조항의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출문제

특정 분야별 사실조사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아닌 것은?

- 1) 행정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행정사
- 2)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사고중재조사관
- 4) 변호사법의 변호사

해설 ④, 변호사법의 법률사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임

변호사법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사전에 금품, 향응 또는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변호사가 아닌 자도 변호사의 고유 업무에 조력하여 그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해설 ④,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의 업무에 조력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입니다.

0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자
2.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유상(有償)으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제공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
6.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아연구를 한 자
7.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한 자
8.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한 자
9.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한 자
- 9의2. 서면고지 없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 9의3.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채취자의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10.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11.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 부동의 유전자 채취와 유전자 검사도 처벌대상임

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결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결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판례(2017년 대법) :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 산업스파이 대응은 향후 탐정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임

09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0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

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쓴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실거나 실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기출문제

탐정이 지득해야 할 법률 지식 중 옳지 않은 것은?

- 1) 본인과 상대방 혹은 본인과 복수의 상대방 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 2) 탐정이 정보조사 중 공무원인 양 행세하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으로 처벌될 수 있다.
- 3) 다수의 민사판례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 4) 타인간 대화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개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대화 당사자이면 양자든 다자간이든 대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 1)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현행범은 주거부정이 아니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 2)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숨겨주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다.
- 3) 빈집 등への 침입 시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 4) 교제 요구,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는 지속적 괴롭힘도 처벌 대상이다.

해설 ①,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주거불명에 한정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처벌종류가 아닌 것은?

- 1) 빈집 등에의 침입
- 2) 시체 현장변경 등
- 3) 관명사칭 등
- 4) 공무원 자격사칭 등

해설 ④, 공무원 자격사칭은 형법상 처벌규정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 2) 공직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 3) 공직자 등 예산의 사적사용 등 부조리
- 4)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해설 ④,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담을 하거나 절차를 대리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행위가 금지된 분야가 아닌 것은?

- 1) 행정심판 분야
- 2) 부패·공익신고 분야
- 3) 고충민원 분야
- 4) 생활민원 분야

해설 ④, 생활민원 분야는 상담, 절차대리 및 그 대가 수수 등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탐정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탐정의 생활정보지원 사실조사 영역과 거리가 먼 것은?

- 1)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 사실조사(도로교통법)
- 2) 학교폭력피해 구제 사실조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3) 영업정지처분 구제 사실조사(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 4) 토지보상 및 수용에 관한 이의, 재결 신청에 관한 사실조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설 ④,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탐정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무관한 것은?

- 1) 사고발생 원인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
- 2)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
- 3) 위 1), 2)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 4)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보험금 반환

해설 ④,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처벌규정에 보험금 반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1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 3의2.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7의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출문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 1)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 가능하다.
- 2)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하는 경우 가능하다.
- 3) 위 제2항)의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 4) 제3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다.

해설 ④, 제3자라도 위임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 1) 주민등록법
- 2) 경찰법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해설 ②, 경찰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로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공 행위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규정, 공공기관 업무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2)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4)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해설 ④,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법령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수집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와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 1)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된다.
-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된다.
- 3)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 처벌된다.
- 4) 위 2), 3)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설 ①,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출문제

재외국민 보호를 다루는 법률이 아닌 것은?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 여권법
- 3) 재외국민등록법
- 4) 민방위기본법

해설 ④,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재외국민 보호와는 무관합니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규율하는 경찰의 원칙 중 탐정의 사생활 정보조사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원칙은?

-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2) 경찰공공의 원칙
- 3) 경찰비례의 원칙
- 4) 경찰책임의 원칙

해설 ①, 경찰공공의 원칙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생활관계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이로 인해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정보조사 탐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콜센터 운용, 신속대응팀 파견근거는?

- 1) 외교부 훈령 제110호(영사업무 지침)
- 2) 여권법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4) 재외국민등록법

해설 ①, 법률이 아닌 외교부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탐정협회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한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 가입 대부분의 국가에서 탐정에게 허용하고 있는 분야는?

- 1) 위협방지를 위한 출입
- 2) 보호조치
- 3) 불심검문
- 4) 기관이나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해설 ④, 한국과 달리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사단체에 대한 탐정의 사실조회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1) 카메라, 휴대폰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 2) 위 1)의 경우,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는 처벌된다.
- 3)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가중처벌된다.
-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는 처벌된다.

해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01 정보취득 관련

1 정보의 특성

정보란 어떤 목적에 맞게 정리된 자료(데이터)를 말한다. 자연이나 사회 혹은 인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지식을 모아둔 것을 자료라고 말하고,

이 자료가 어떤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정보라고 부른다. 즉, 정보란 정리된 자료이다.

정보는 글, 그림, 부호, 빛, 소리, 신호, 언어,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첩보와 구별

첩보는 부정확한 견문지식을 포함한다. 첩보는 기초적 단편적 불규칙적 미확인 상태의 지식이다.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묻지 않는다.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 자체의 묘사이다.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첩보는 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정보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맞도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여 만든 완전한 지식이다.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적시성이 요구된다. 정보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된다. 정보의 처리절차를 강조된다.

3 정보의 가치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보가 당면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어야 한다.

정보는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정보는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의 제공이 너무 이르면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 너무 늦으면 시기를 잃어 정보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의 완전성은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완전한 지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긴급한 사항을 완전한 정보로 제공하려다가 시기를 놓쳐선 안된다.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면 선호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4 정보의 활용

정보는 관련 자료의 수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자료 등을 통해서 정보요구자의 요구에 맞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정보요구자에 맞는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것이 정보보고서가 된다.

이 보고서는 탐정활동에 있어서 수임결과보고서 형태로 사용가능하고 이 보고서는 다양한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정확도와 신뢰도는 높아진다.

02 증거관련

1 증거의 의미

증거(證據)는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증인 등이 있다.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재판이나 수사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2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는 증거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된 것이지만 재판에서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직접증거란 직접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피고의 자백이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사건이 찍힌 영상이나 화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증거란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지문, 혈흔, 체액, 족적[1] 증인의 증언[2]등이 간접증거가 된다.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간접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증은 사실을 입증하고, 법관이 확신이 들게 해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반증은 본증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된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

문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재판소에 올라올 자격이 되는지"의 개념이며, 증명력은 "이 증거가 일단 법원에 올라왔을 때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있고, 증명력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다.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예외 등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03 범죄론

1 범죄란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범죄란 단순히 '나쁜 행위'를 의미하지만 '무엇이 나쁜가? 왜 그것이 나쁜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며

오늘날에는 크게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 범죄개념이란 이미 제정되어있는 형법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시말해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에 관한 일반론이 즉 형법총론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삼단계 범죄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성립요건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즉 입법자가 반드시 형벌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 범죄개념과는 달리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정책적 기준점을 제시하게 한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법과 사회의 지상가치, 대중의 법적 인식과 사회적 통념은 달라지기 때문에(패러다임의 전환)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니게 될 수도

반면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사회라도 사회에 따라 같은 행위가 범죄인 것도 아닌 것도 존재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민주권론'으로 신권과 전제적 왕권, 귀족정이 중시되던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체제를 전복하는 반란행위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선 오히려 이쪽이 당연시되고, 공공연히 왕정복고 따위를 주장하

는 것이 오히려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조혼이 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대부분의 혼인이 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선 만 18세 미만은 불법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회에 따라 범죄의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많은 사회에선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선교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타 종교의 선교를 아예 금지하는 중동의 종교문제, 대마초의 일부국가 합법화(혹은 비범죄화)를 예시로 들 수 있겠다.

2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평소에는 정신병질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더(Kurt Schneider)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보통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발정·광신·자기현시·의지결여·폭발적 성격·무기력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들의 정신병질(精神病質, Psychopathy)은 평소에는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브르크하멜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고통에 무감각하므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재범률도 높고 연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일반 범죄자들보다 높다.

또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하여 사소한 일에도 강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이같은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에 사회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전인격적 병리현상으로 본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Robert D. Hare)가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라고 부르는 사이코패스 진단방법을 개발하였는데,

4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에 근접할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 연쇄살인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유영철은 이 진단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34점을 기록하여 전형적 사이코패스로 판정받았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15~16점을 기록한다고 한다.

한편,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 같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산업심리학자 보드와 프리츠는 영국 최고경영자들의 인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일치하였으며, 임원으로 승진할 대상자들 가운데 3.5%가 사이코패스로 드러났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로버트 헤어와 폴 바비악은 남다른 지능과 포장술 등으로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른바 '화이트컬러 사이코패스'를 '양복을 입은 뱀(Snakes In Suits)'에 비유하였다.

3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소시오패스의 예로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추적자'에서 배우 김상중이 연기했던 인물 '강동윤'을 들 수 있다.

강동윤은 평소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 심지어 살인도 스스럼없이 저지른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는 영화 '케빈에 대하여' ('We need to talk about Kevin')에 나오는 아들 케빈이다.

케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행동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실에서는 히틀러나 후세인같은 독재자나, 일부 부패한 종교의 교주들이 소시오패스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 가족 중에, 학교에, 혹은 직장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에 비해 훨씬 많다고 알려져있는데, 전 인구의 4%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한다(즉 25명 중 1명).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우리의 일상속에 늘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 자신을 잘 위장하며 감정조절이 뛰어나다.
-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겟으로 생각한다.
- 매우 계산적이다.
-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다.
-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 재미삼아 한다. (예. 동물학대, 불내기)
-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자극욕구가 강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한다.
-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 반성을 하거나 (예. ‘이번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나도 피해자다’)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다.

4 셉테드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으로서

셉티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셉테드가 맞는 표기법이다. 영어 동사 과거형 "-ed"의 발음법에 따라 셉'티드'라는 발음 및 표기법이 알려진 듯 하나, 세계 어디에서도 셉'티드'로 발음하는 곳은 없다.

실제로 국제셉테드협회 및 각국 경찰청 홈페이지에 발음기호가 병행표기되어 있는데, 셉테드[sep-ted]로 표기하고 있다.

제인 제이콥스(J. Jacobs) 1961년 저서에서 기원하는 신개념 범죄예방 방법.

지역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범죄학, 지리학, 도시공학, 심리학 등의 학제간 연구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학술개념의 일종으로 유입되어 건축 및 경찰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경찰청이 2004년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 적용한 셉테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2012년 마포구 염리동에 추진된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2014년 부산 김길태 사건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셉테드(라는 이름의 경관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 효과는 범죄 시도를 좌절시키는 것 이외에도 주민들이 범죄로부터의 공포를 덜 느끼게 하는 것,

만에 하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기 쉽게 만드는 것,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 등이 있다.

단, 이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되며, 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서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자연적 지역 강화(natural territorial reinforcement), 유지(maintenance),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을 거론할 수 있다.

